

학사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8. 06. 26.

담당 : 교학팀(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의 임기)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	제6조(회의록)	제7조(업무관장)	제8조(시행세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 및 학사에 관하여 필요한 학사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사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
 1.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2. 교과과정 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
 3. 교과목 구분 및 학점 배정에 관한사항
 4. 기타 교과과정 및 교양과정에 제반 사항
- ②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
- ③ 졸업고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,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/3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업무관장)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교학처 교학팀에서 관장한다.

제8조(시행세칙)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 년 06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